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도미넌트 엘엘씨(DOMINANT LLC)
소유물건(2025타경4489)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감정평가서번호: B2511-1-1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화감정평가사사무소

(선박)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백 경 아

감정평가액	구억구천팔백구십구만원정 (₩998,99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도미넌트 엘엘씨(DOMINANT LLC) (2025타경448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1.19	2025.11.19	2025.11.2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선박	1척 이	선박 하	1척 여	- 백	998,990,000
	합계					₩998,99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선박 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카이사르(CAESAR)		선박번호	IMO NO: 8835968		선 적 항	홀롬스크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평 가 액		산 출 근 거				
		단 가	금 액					
선 체	683 G/T	1,379,000	941,857,000	5,000,000 × 0.2759(5/25)관찰감가				
기 관	589 KW	97,000	57,133,000	550,000 × 0.178(5/20)관찰감가				
의 장 품	32 점	-	-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 계			₩998,990,000.-		잔가율(선체20%, 기관10%)			
선 박 의 내 용								
선 체	종 류	기선		선 형	-		척 도	
	용 도	냉동화물선		총 톤 수	683	G/T	길이 :	50.04 M
	등 급	-		순 톤 수	233	N/T	폭 :	9.30 M
	선 질	강		적화톤수	529	DWT	높이 :	5.160 M
기 관	선 창	-		조 선 소	-		비 고	
	객 실	-		건조년월일	1990		-	
	승무원실	-		진수년월일	-			
	조 선 지	-						
기 관	종 류	DIESEL ENGINE		기 통 수	-	CYL	제 작 소	
	실 마 력	589.000	KW	회 전 수	-	RPM	미상	
	공칭마력	-	KW	기 통 경	-	m/m	제조일자 및 번호	
	형 식	-		행 정	-	m/m	미상	
	속 력	-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 류 및 수 량	-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칭 * 구조*규격	종류 형식*용량	제 작 자	작 번 일	자 호 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Anchor			미상		2	일괄 선체에 포함평가		
2	Anchor Chain			미상		2			
3	Windlass			미상		1식			
	Chain Drum								
	Warping Head								
	기타부대설비포함								
4	Mooring Winch			미상		1식			
	Hawser Drum								
	기타부대설비포함								
5	Steering System			미상		1식			
	Steering Stand								
	기타부대설비포함								
6	telegraph			미상		1식			
	기타부대설비포함								
7	Clear View Screen			미상		1식			
	φ 350mm								
8	Marine Radar			FURUNO		1			
	Processor Unit: RPU-013			미상					
	Monitor Unit: Mu-201CR								
	기타부대설비포함								
9	Echo Sounder			미상		1			
	Model: SES-2000								
10	Color GPS Plotter			FURUNO		1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칭 * 구조*규격	종류 형식*용량	제 작 자	작 번 일 자	수량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Model: GP-3500			미상				
11	U.A.I.S		SAMYUNG		1			
	Model: SI-30			미상				
12	VHF Radiotelephone		FURUNO		1			
	Model: FM-8500			미상				
13	Color Radar		SAMYUNG		1			
	Model: SMR-3700			미상				
14	Facsimile		FURUNO		1			
				미상				
15	VHF Marine		SAMYUNG		1			
	Model: STR-6000A			2018.03				
16	VHF Marine		SAMYUNG		1			
	Model: STR-6000A			미상				
17	Life Raft			미상	4			
	Inflatable Type							
18	EPIRB		SAMYUNG		1			
	Model: SEP-406							
19	Deck Crane			미상	1			
	SWL 0.9T							
	기타부대설비포함							
20	Aux ¹ Engine & Generator			미상	3식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칭 * 구조*규격	종류 형식*용량	제 작 자	작 번 일	자 호 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21	기타부대설비포함 BILGE Sperator Type: GRS-05EB Cap: 0.5m ³ /HR 기타부대설비포함		거림엔지니어링(주)	2009		1식			
22	기타부대설비포함 Purifier			미상		1식			
23	기타부대설비포함 Sewage Equipment			미상		1식			
24	기타부대설비포함 각종Pump, pipe 및 Tank 어획 및 저장 등의 시설일체포함 기타부대설비포함			미상		1식			
25	기타부대설비포함 Main Switch Board			미상		1식			
합								WO.-	
이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우성부두 안벽” 에 정박 중인 러시아국적의 683톤 냉동화물선 “카이사르(CAESAR)” 로서, 부산지방법원의 선박임의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 규정과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에 별다른 조건은 없음.

4. 감정평가의 3방식

가. 원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방식” 이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임.

2) 원가법

“원가법” 이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임.

3) 적산법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임료”란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임.

나. 비교방식

1) 비교방식

“비교방식”이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임.

2)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임.

3)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임료”란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임.

4)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수익방식

1) 수익방식

“수익방식”이란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임.

2)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수익가액”이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임.

3)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수익임료”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임.

5.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선박에 대한 평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선체·기관·의장(艙裝)별로 구분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거래사례비교법 및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바 주된 평가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6.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인 2025년 11월 19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실지조사 실시기간 등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11월 19일임.

8. 기타사항

- 가. 본건 선박은 러시아 국적의 선박으로서, 선박관련 증서 등의 취득이 곤란하여 귀 제시목록 등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평가하였음.
- 나. 본건 선박의 운항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은 곤란하나, 기준시점 현재 정박 중인 점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운항, 정상적인 가동 및 사용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반드시 재확인을 요함.
- 다. 본건은 선체, 기관 및 의장품으로 분류하되, 의뢰 목록에는 필수 의장품에 대한 목록제시가 없는바 의장품은 현장조사 시 육안식별 가능한 품목 등을 기준으로 목록 작성 하였으며, 의장품은 선체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라. 본건 선박은 일반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음.
- 마. 본건 선박은 의장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모터, 펌프류, 배관류, 냉동 등에 관련된 설비, 기타 의장품 및 일부 어획, 저장 관련 시설 등은 선체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선박가액의 산출근거

1. 평가방법

본건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선형, 구조, 용재, 시공 상태, 규격, 형식 등을 참작하여 선체, 기관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의장품 등은 선체에 대한 부착성 및 단독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체에 포함 평가하였음.

2. 대상물건의 개요

- 일련번호(1) :선박

선박의명칭	카이사르(CAESAR)	IMO번호	8835968	
		호출부호	UCXC	
선질	강	총톤수	683톤	
		순톤수	233톤	
선박의 종류	냉동화물선			
엔진 수 및 출력	589.000[KW] -[RPM]		1기	
주요 치수	길이	50.04m	선박국적	러시아
	너비	9.30 m	선적항	홀롬스크
	깊이	5.160m	건조년월일	1990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재조달원가의 산정

가. 선박신조단가

1) 선체

· 선박 선체 신조단가(한국감정원, 2010년 발행)(단위: 천원)

선종	구분	신조단가(G/T)
		신통수기준
유조선 및 화물선	500G/T미만	3,500 ~ 5,000
	500-1,000G/T	2,800 ~ 4,000
	1,000-3,000G/T	2,700 ~ 3,800
	3,000-10,000G/T	1,500 ~ 3,200
	10,000-20,000G/T	1,200 ~ 1,900
	20,000-60,000G/T	700 ~ 1,500
	60,000G/T이상	500 ~ 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선박 선체 신조가격수준(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 2023-01-01기준)

상선 유형	규모(CBM/TEU/DWT)	단가(\$, CBM/TEU/DWT)
LPG Carrier	22,000 ~ 23,000CBM	2,080 ~ 2,375
	38,000 ~ 40,000CBM	1,080 ~ 1,590
	45,000CBM	1,540 ~ 1,625
	82,000 ~ 91,000CBM	875 ~ 1,250
LNG Carrier	18,000CBM	3,040 ~ 3,460
	88,000CBM	1,080
	170,000 ~ 18,000CBM	1,040 ~ 1,550
	200,000CBM	1,650 ~ 1,450
VLGC	84,000 ~ 91,000CBM	800 ~ 1,000
VLEC	98,000 ~ 99,000CBM	1,200 ~ 1,550
Liquefied GAS Carrier	18,00 ~ 91,000CBM	1,700 ~ 2,600
	40,000CBM	1,080 ~ 1,350
	86,000 ~ 98,000CBM	750 ~ 1,150
	174,000 ~ 180,000CBM	1,000 ~ 1,200
Container Carrier	1,000 ~ 2,800TEU	13,290 ~ 44,050
	55,000 ~ 9,000TEU	14,100 ~ 28,400
	11,400 ~ 28,000TEU	6,800 ~ 13,210
	77,000TEU	1,580
	130,000 ~ 150,000TEU	730 ~ 920
Tanker	3,500 ~ 6,500DWT	2,700 ~ 4,000
	10,000 ~ 33,000DWT	1,250 ~ 1,420
	50,000 ~ 51,000DWT	670 ~ 1,170
	114,000 ~ 159,000DWT	300 ~ 590
	300,000 ~ 320,000DWT	290 ~ 380
Bulkier	62,000 ~ 63,000DWT	500 ~ 590
	180,000DWT	280 ~ 350
ROPAX	53,000DWT	3,500
CON-RO	45,700DWT	1,87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기관

· 선박 기관 신조단가(한국감정원, 2010년 발행)(단위: 원)

구 분		신조단가(Kw당)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70,000 ~ 370,000
		중·저속	300,000 ~ 530,000
보조기관	"	국산 고속	120,000 ~ 200,000
		외산 중·고속	200,000 ~ 330,000

· 선박 기관 신조단가(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 2023-01-01기준)(단위: 원)

구 분		신조단가 (PS 기준, 단위: 천원)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47,000 ~ 275,000
		중·저속	367,750 이하
보조기관	"	국산 고속	88,000 ~ 184,000
		외산 중·고속	169,000 ~ 250,000

나. 재조달원가의 결정

재조달원가라 함은 대상 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하며, 상기 신조단가 자료, 신조가격 변동 추이, 선박의 진수일 및 선박의 규모 등을 감안하고, 의장품을 선체에 포함 평가하는 점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체의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물가변동을 등 감안)

- 상기 화물선 및 강선 기준을 참조하되 현상 등을 고려하여 @5,000,000원/톤으로 가격 결정.
- 상기 주기관 자료를 참조하되 현상 등을 고려하여 @550,000원/Kw로 가격 결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내용연수 등 결정

가. 내용연수의 결정

- 1) “경제적 내용연수”란 물리적 내구연한의 범위 내에서 물건의 유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가능기간으로서, 대상물건의 내용연수 조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구)한국감정원 발간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동종 또는 유사물건의 내용연수 등을 참고하고 대상 선박의 유지, 관리상태 및 자본적 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수산업법 상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선질별	내용연수	잔존가치율
강선	25년	20%
강화플라스틱(F.R.P)선	20년	10%
목선	15년	10%

· 내용연수표(한국감정원)

설비의 종류	세목	내용연수
화물선(강조), 유조선(강조), 예인선(강조) 화물선(일반화물선, 전용화물선, 냉동화물선), 유조선(화학제품 운반선)	선체 기관	20-25 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 2023-01-01기준)(단위: 원)

용도	선종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감가율	잔존가치율	
화물선	강선	일반화물선	20년	정률법	0.1045	11%
		유조선	20년		0.109	10%
		특수화물선	14년	“	0.152	10%
		LNG운반선	20년		0.109	10%
	합성수지선(F.R.P)	20년	“	0.109	10%	
	목선	14년	정액법	0.0643	10%	
어선	강선	25년	정률법	0.0879	10%	
	경금속선	16년	“	0.134	10%	
	합성수지선(F.R.P)	15년	“	0.152	10%	
	목선	12년	정액법	0.075	10%	

2) 내용연수의 결정

상기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체는 25년, 기관 20년으로 결정함.

나. 감가수정

1) 선체

본건은 유효 경제적 잔존연수는 경과하였으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잔존연수를 5년으로 하고, 본건과 유사한 선박의 신조가격 대비 폐재가격 비율, 시장현황, 상기자료 및 본건 선체의 선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존가치율 20%를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해 감가수정 하였음.

2) 기관

본건과 유사한 기관의 잔존가치율 수준, 동류형 선박기관 평가선례 및 본건 기관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잔존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잔존가치율 10%를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해 감가수정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선박가격 산출

구분		총톤수 및 마력, 수량	평가가액(원)		비고
			평가단가	평가가액	
선박	선체	683 G/T	1,379,000	941,857,000	$5,000,000 \times 0.2759(5/25)$ 관찰감가
	기관	589.000 Kw	97,000	57,133,000	$550,000 \times 0.178(5/20)$ 관찰감가
	의장품	32점 외	-	선체포함평가	의장품 명세표 참조
합계					998,990,000

※ 평가단가는 백원단위에서 버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선박 가액의 참고자료

가. 유사 선박의 평가사례

선박명칭	카***	선종	냉동화물선
총톤수	683톤	기관	589KW × 1기
건조일자	1990	기관 제작일자	-
평가목적 (비교)	경매 (본건)	기준시점	2022. 10. 19
평가금액	₩1,102,223,000.- (선체:@4,500,000 × 0.3347(8/25)) 관찰감가 (기관:@500,000 × 0.251(8/20)) 관찰감가 (의장품 29점, 선체에 포함평가)		

선박명칭	알***	선종	냉동화물선
총톤수	5,084톤	기관	4,045kw × 1기
건조일자	1991	기관 제작일자	-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3. 09. 22
평가금액	₩3,441,868,000.- (선체:@2,700,000 × 0.251(8/20)) 관찰감가 (기관:@400,000 × 0.251(8/20)) 관찰감가 (의장품 52점, 선체에 포함평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선박명칭	나**	선종	냉동화물선
총톤수	4,190톤	기관	3,353KW × 6기
건조일자	1990	기관 제작일자	-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0.01.09
평가금액	₩5,463,885,000.- (선체:@3,600,000 × 0.3347(10/25)) 관찰감가 (기관:@500,000 × 0.251(8/20)) 관찰감가 (의장품 47점, 선체에 포함평가)		

선박명칭	토*	선종	어선
총톤수	865톤	기관	1940kw × 1기
건조일자	1985	기관 제작일자	-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5.06.26
평가금액	₩1,506,010,000.- (선체:@9,000,000 × 0.178(5/20)) 관찰감가 (기관:@350,000 × 0.178(5/20)) 관찰감가 (의장품 37점, 선체에 포함평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톤수, 마력	단가	금액	비고(단가산정)
선체	683톤	1,379,000	941,857,000	5,000,000 × 0.2759(5/25) 관찰감가
기관	589.000 Kw	97,000	57,133,000	550,000 × 0.178(5/20) 관찰감가
의장	32점 외	-	선체포함평가	의장품명세표 참조
합계	-	-	998,990,000	-

2. 결정의견

상기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유사선박의 평가선례, 유사선박의 시장가격수준 및 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4) 운항사항

(2) 기관의 현황
(5) 실사장소

(3) 의장품의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 현황

본건 선체는 1990년 건조된 러시아 국적의 냉동화물선(카이사르(CAESAR))(683톤)으로서,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2) 기관의 현황

본건 선박에 설치된 주기관은 디젤기관[589kw] 1기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다소 노후화되었음.

(3) 의장품의 현황

본건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은 운항 등에 필요한 항해장비, 조타설비, 기관보조설비, 저장설비 등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다소 노후화되었음.

(4) 운항사항

선적항은 흘롬스크이며,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운항중단된 상태임.

(5) 실사장소

본건 선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우성부두 안벽"에 정박중인 것을 실사하였음.

(6) 기타 참고사항

1) 본건 선박의 국적은 러시아, 선적항은 흘롬스크이며 IMO No.8835968임.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4) 운항사항

(2) 기관의 현황
(5) 실사장소

(3) 의장품의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2) 본건 선박의 기관 및 의장품 등은 본건에 비치된 물건의 개략적인 현황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선박은 의장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모터, 펌프류, 배관류, 냉동 등에 관련된 설비, 기타 의장품 및 일부 어획, 저장 관련 시설 등은 선체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사 진 용 지



본건전경(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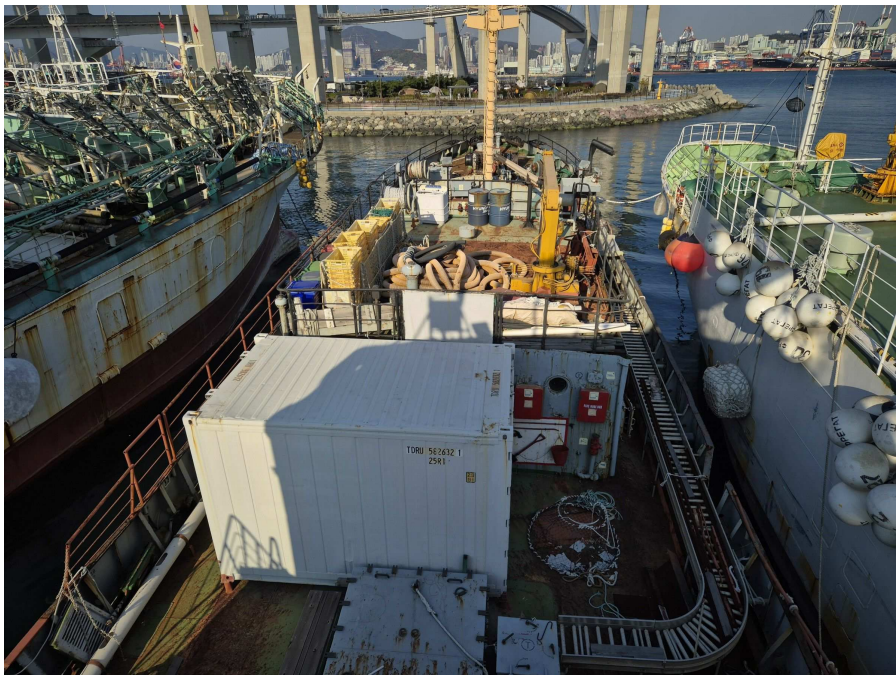


본건전경(측면)

사 진 용 지



본건전경(갑판)



본건전경(갑판)

사 진 용 지



본건선박 조타실



본건선박 주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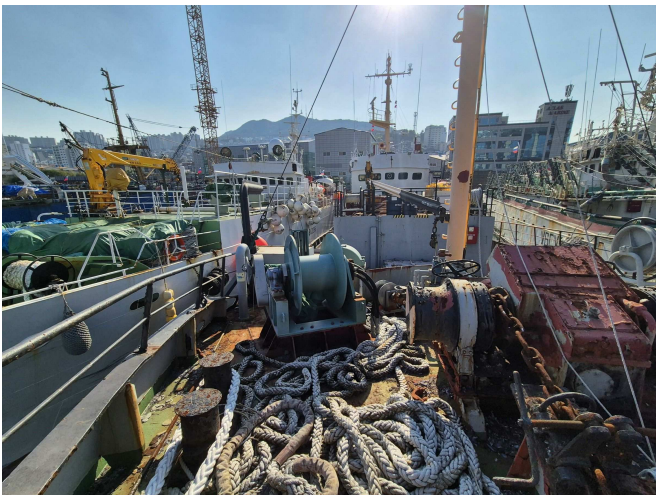
사진용지



본건의장품 (1~2)



본건의장품 (3)



본건의장품 (4)



본건의장품 (5)

사진용지



본건의장품 (6)



본건의장품 (7)



본건의장품 (8)



본건의장품 (9)

사 진 용 지



본건의장품(10)



본건의장품(11)



본건의장품(12)



본건의장품(13)

사진용지



본건의장품(14)



본건의장품(15)



본건의장품(16)



본건의장품(17)

사진용지



본건의장품(18)



본건의장품(19)



본건의장품(20)



본건의장품(21)

사진용지



본건의장품(22)



본건의장품(23)



본건의장품(24)



본건의장품(25)